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금융채권자 및 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
가. 법인인 자가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1호	2,000
나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1호	1,000
다.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경영인 및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	법 제36조 제1항제2호	1,000

경우		
라. 법인인 자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3호	1,000
마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3호	500
바. 법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4호	1,000